

##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생명윤리적 검토(요약)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인간 생명은 그 자체로 다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행사의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헌재가 ‘자기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과도하게 침해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맹백한 자기모순이다. 생명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리’일 뿐 아니라, 단 한 번의 침해로도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신 22주 내외까지 낙태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제안은 ‘두 권리의 조화’가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우위에 둔 모순된 결정이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개정안 역시 헌법재판소의 제안을 충실히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안이 일부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낙태의 완전허용’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형법에 상징적으로나마 처벌규정을 그대로 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임신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임신 15-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친 후 낙태 허용 방침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경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므로, 최고의 가치인 인간 생명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헌재 판결 중 소수 의견이 밝힌 것처럼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 것은 태아가 여성의 삶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제거하겠다는 발상이고, 이것은 안락사, 고려장 등 불편을 주는 노인이나 말기환자들도 같은 논리로 제거할 수 있다는 사고와 이어질 수 있고, 무책임한 생명경시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선과 개인의 완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라면 육아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시기의 낙태도 무고한 인간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찬성할 수 없지만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개정안은 가급적 낙태 가능 시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하고(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시기의 낙태이든(개정안에서 전면 허용하는 14주 이내도) 반드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과정이 필수로 제공되어 출산으로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고귀한 태아의 생명의 가치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동시에 지켜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서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위한 법과 제도와 가치관을 만들고,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감각을 더욱 키우고 가정은 물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함께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따라서 모든 출산을 축복하고 지지하면서 임신한 여성과 새 생명을 지원하는 입법도 낙태법 개정안과 함께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혼모가 익명으로 출산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밀출산법’ 제정, 아기의 남성이 양육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을 때 강제하는 ‘양육비이행책임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 정부가 미리 충분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차후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구상권 행사,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고려하는 기혼자를 위하여 획기적인 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혜택 지원, 다자녀 가족들에게 국가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하게 특혜를 주고, 직장 여성을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등을 추진해야 한다.